

회칙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분과 “빛장을 여는 사람들”(이하 ‘본회’)이라고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회는 이 땅의 여성장애우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여성장애인의 문제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소재지) ① 본회의 본부는 서울에 둔다.

② 본회는 장애우권의 문제연구소 지소에 당연지부를 둘 수 있다.

단, 본회가 인정하는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사업)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제 2 장 회 원

제5조(구성과 가입)

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하며,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야 한다.

②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회비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한다.

제6조(자격)

① 정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서 정기모임에 3회 이상 출석한 자로 한다.

② 후원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서 재정을 후원하는 개인 및 단체로 한다.

③ 명예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서 본회의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자로 한다.

제7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① 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.

② 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및 표결할 권리, 선거 및 피선거권, 재정의 공개 요구 권리를 가진다.

제8조(탈퇴 및 징계) 개인적인 사유로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의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. 또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.

제 3 장 기 구

제1절 총회

제9조(지위 및 구성) 총회는 본회의 최고기구로서 정회원 전체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제10조(정기총회)

① 정기총회는 연1회 열리며 위원장(또는 대표)은 회계연도 개시 3월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

② 위원장은 총회일 15일 전까지 일시, 장소 및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정회원 모두에게 총회의 소집 사실을 위원장의 명의로 발송하여야 한다.

제11조(임시총회)

① 임시총회는 위원장(또는 대표) 또는 운영위원 2/3 이상의 요구나 정회원 1/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.

② 임시총회 소집의 통지는 전조 2항의 방법에 따른다.

제12조(권한 및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.

- ① 위원장(또는 대표)의 선출
- ② 운영위원의 위촉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③ 예산 및 결산 보고와 사업계획의 승인
- ④ 회칙의 제정 및 개정의 승인
- ⑤ 회비에 관한 사항
- ⑥ 지소 설치 및 폐쇄의 승인
- ⑦ 기타 운영위의 제안 및 정회원 5인 이상의 발의에 의한 사항

제13조(의결방법)

① 총회에서의 의결은 재적 정회원 1/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단, 가부 동수일 때는 1회 더 의결에 붙이되 다시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.

② 정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를 총회소집 통지 시에 발송한 소정의 위임장을 통하여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14조(회의록의 작성) 서기는 총회가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고 운영위원이 서명, 날인하여 비치한다.

제2절 운영위원회

제15조(지위)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조직과 운영 및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의하는 대의 의결기구이다.

제16조(구성)

①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위촉 선출된 운영위원과 기존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운영위원으로 한다. (과 부서장 및 서기, 회계로 한다.) 운영위원은 부서장을 겸임할 수 있다.

② 운영위원의 수는 7인 이상으로 한다.

③ 위원장(또는 대표)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운영위원장을 겸임한다.

제17조(소집) 운영위원회는 매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, 운영위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운영위원장의 명의로 소집한다.

제18조(권한)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.

- ① 회칙 시행 및 집행을 위한 제 규정의 제정, 개정에 관한 심의, 의결
- ② 결산 및 예산과 사업계획의 심의 의결
- ③ 잉여금의 처분에 관한 심의, 의결
- ④ 운영위원의 수에 관한 의결
- ⑤ 회원 자격의 취득과 상실 및 권리의 제한에 관한 사항
- ⑥ 회칙의 해석에 관한 사항

- ⑦ 연대사업 활동에 관한 심의, 의결
 - ⑧ 명예회원의 위촉
 - ⑨ 기타 본회의 위상과 관계한 사항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사항
- 제19조(의결) *본회의 위상과 관계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사항*

- ①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2/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및 승인된 사항은 총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.

제20조(임기)

- ① 위원장(대표)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.
 -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 연임이 가능하고 1회에 한한다.
- 제21조(회의록의 작성) 운영위원회는 자체 역할 분담으로 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가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운영위원의 서명, 날인을 받아 비치한다.

제3절 *조직*

- 제22조(구분) 업무 조직으로 연구부, 홍보부, 회원관리부, 서기, 회계를 둔다.
- 제23조(구성) 각 부서의 부장 1인, 차장 1인과 서기, 회계 1인으로 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..
- 제24조(역할)

- ① 연구부는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연구하고 수집하고 대안과 정책을 마련한다.
 - ② 홍보부는 여성장애인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국내외 관련단체와 연대한다.
 - ③ 회원관리부는 회원간의 유대와 각종 모임의 참여를 도모하고, 효율적인 자원 활동을 지원한다.
- 제25조(임기) 각 부장, 차장 및 서기, 회계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4절 모임

- 제26조(모임의 목적)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위한 대안을 찾고 친목 및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7조(모임의 구분)
- ① 월례모임은 월1회 실시하며, 참여회원의 친목과 주간모임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.
 - ② 주간모임은 주1회 실시하며, 여성장애인의 문제에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대안을 연구하고 학습하는 내용으로 한다.

제 4 장 제 정

- 제28조(회계년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에서 익년 2월까지로 한다.
- 제29조(수입) 본회의 수입은 정회원 회비, 후원회비, 목적사업수입, 연구소 지원 등으로 한다.
- 제30조(지출)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지출할 수 있다.
- 제31조(기금)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장,단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.

제32조(회계의 보고) 회계는 수입, 지출 상황을 매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원칙대로

제 5 장 보 칙

제33조(규정) 이 회칙의 시행 및 집행에 필요한 제 규정을 둘 수 있다.

제34조(준용규정) 이 회칙과 시행 및 집행을 위한 제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사회적 관습에 따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
2.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